#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
당사는 상법 제 527조의 3에 따라 2013년 7월 29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당사가 두산산업차량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두산산업차량 주식회사는 해산하기로 결의한 바,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당사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부터 2013년 8월 30일까지 회사 본점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3년 7월 30일

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가 18-12
(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75)
주 식 회 사 두 산
대표이사 이 재 경